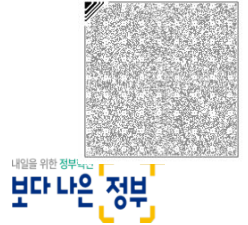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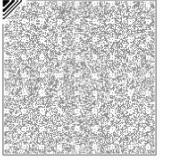
제목 수은함유 체온계·혈압계 사용금지 유예조치 알림

1. 귀 회(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19.11.22.)되어 오는 2.20.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3. 이에, 우리 처에서는 '14.8.11. 개정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국제수은협약 발효일로부터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4. 현재 폐기업무 소관 부처에서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등' 관련 규정 준비를 진행중에 있어, 오는 2.20.부터 수은 함유 체온계·혈압계가 사용금지 될 경우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하여 수은함유 체온계·혈압계의 보관·운반·폐기 등 처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따라서, 의료기관 등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일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후 시행일('21.4월 예정)까지 수은 함유 체온계·혈압계의 사용금지 유예

6. 다만, 사용금지 유예조치 기간 중이더라도 국민 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무수은 체온계·혈압계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주무관 **이선미** 사무관 **성홍모** 의료기기정책 전결 2020. 1. 16.
과장 **정진이**

협조자

시행 의료기기정책과-440 (2020. 1. 16.)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의료기기정책과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3760 팩스번호 043-719-3750 / yiseonmi@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